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른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기술기준과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체 검사의 결과 및 부적합한 사항 중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와 조치 계획을 연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 분야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토목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의2와 같다.

별표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의2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 자의 송전 및 배전설비	(1) 가공송전설비	3년 이내	
	(2) 지중송전설비	3년 이내	
	(3) 변전설비	3년 이내	
	(4) 송전·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송전설비(HVDC)	2년 이내	
	(나) 해저케이블	2년 이내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이내	
	(5) 가공배전설비	4년 이내	
	(6) 지중배전설비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이내	
	(8) 송전·배전전력구 구조물	3년 이내	

별표 1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50조의4 관련)

1. 송·배전사업자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서 식	보 고 기 한
가.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결과(법 제65조 2 관련)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 까지 보고

별지 47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검사업무 실시결과 보고

한국전력공사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한국전력공사사장 ㉠ 제 목: 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1. 송·변전 전기설비										
구 분		송전설비			변전설비			특수설비		
		철탑	전력선	맨홀· 전력구 전력설비	변압기	개폐 장치	부대 설비	HVDC	해저 케이블	FACTS
정기 검사	적합									
	부적합									
	미검사									
	계									
2. 배전, ESS 및 구조물 전기설비										
구 분		배전설비			전기 저장장치 (ESS)	구분		구조물(전력구)		
		전주	지상기기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송전	배전	
정기 검사	적합				검사 결과	A				
	부적합			B, C						
				D, E						
	미검사				미검사					
	계				계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2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u>
<u><신 설></u>	<u>① 법 제65조의2에 따른 송전사 업자·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의2와 같다.</u>
<u><신 설></u>	<u>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 준은 기술기준과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정하는 별도 의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년 도 자체 검사의 결과 및 부 적합한 사항 중 미조치 사항 에 대한 사유와 조치계획을 연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u>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	<u>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u> <u>①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u>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 분야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토목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

<신 설>

술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50조의4(송·배전사업자의 자
체 검사 결과 보고)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
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
표 17의2와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 별지)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10의2] 자체 검사 대상 전기 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의2 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시기</th><th>비고</th></tr><tr><td rowspan="8">1. 송전 사업 자 및 배전 사업 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td><td>(1) 가공송전설비</td><td>3년 이내</td><td rowspan="8"></td></tr><tr><td>(2) 지중송전설비</td><td>3년 이내</td></tr><tr><td>(3) 변전설비</td><td>3년 이내</td></tr><tr><td>(4) 송전·변전 특수설비</td><td></td></tr><tr><td>(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td><td>2년 이내</td></tr><tr><td>(나) 해저케이블</td><td>2년 이내</td></tr><tr><td>(다) 유연송전설비(FACTS)</td><td>2년 이내</td></tr><tr><td>(5) 가공배전설비</td><td>4년 이내</td></tr><tr><td rowspan="3"></td><td>(6) 지중배전설비</td><td>4년 이내</td></tr><tr><td>(7) 전기저장장치(ESS)</td><td>1년 이내</td></tr><tr><td>(8) 송전·배전전력구 구조물</td><td>3년 이내</td></tr></table>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송전 사업 자 및 배전 사업 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1) 가공송전설비	3년 이내		(2) 지중송전설비	3년 이내	(3) 변전설비	3년 이내	(4) 송전·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2년 이내	(나) 해저케이블	2년 이내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이내	(5) 가공배전설비	4년 이내		(6) 지중배전설비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이내	(8) 송전·배전전력구 구조물	3년 이내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송전 사업 자 및 배전 사업 자의 송전 및 배전 설비	(1) 가공송전설비	3년 이내																												
	(2) 지중송전설비	3년 이내																												
	(3) 변전설비	3년 이내																												
	(4) 송전·변전 특수설비																													
	(가) 초고압직류 송전설비(HVDC)	2년 이내																												
	(나) 해저케이블	2년 이내																												
	(다) 유연송전설비(FACTS)	2년 이내																												
	(5) 가공배전설비	4년 이내																												
	(6) 지중배전설비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ESS)	1년 이내																												
	(8) 송전·배전전력구 구조물	3년 이내																												
<신설>	[별표 17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50조의4 관련) <table><tr><th>보고사항</th><th>서식</th><th>보고기한</th></tr><tr><td>가.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결과(법 제65조 2 관련)</td><td>-</td><td>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td></tr></table>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결과(법 제65조 2 관련)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송·배전사업자의 자체검사 결과(법 제65조 2 관련)	-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신 설>

[별지 47호의2 서식]검사업무

실시 결과 보고

한국전력공사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한국전력공사사장 ㉠

제 목: 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1. 송·변전 전기설비

구 분	송전설비			변전설비			특수설비		
	철탑	전력선	맨홀·전력구 전력설비	변압기	개폐장치	부대설비	HVDC	해저케이블	FAC TS
정기 검 사	적합								
	부적합								
	미검사								
	계								

2. 배전, ESS 및 구조물 전기설비

구 분	배전설비			전기 저장 장치 (ESS)	구분	구조물(전력구)	
	전주	지상 기기	맨홀· 전력구 전력설비			송전	배전
정기 검 사	적합				검사 결과	A	
	부적합					B, C	
	미검사					D, E	
	계				미검사		